



ISM/ISPS/MLC 동향

36 Myeongji ocean city 9-ro,
Gangseo-gu, Busan, 618-814
Republic of Korea

Phone : +82-70-8799-8349
Fax : +82-70-8799-8319
E-mail: yospark@krs.co.kr
Person in charge: Park Youngshik

수신(Recipients): ISM 사업장 / 안전품질팀

번호(No.) : 2017-01 날짜(Date) : 2017년 01월 20일

제목(subject):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

1.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이 2017년 1월 3일부로 개정 시행되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전문 및 신규법비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이번 개정에 따라 ISM 심사 진행이 다소 변경되었으니, 각 사업장께서는 다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1) 해상화물/여객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미발급 상태에서 인 증심사의 신청 및 시행이 가능합니다.
단, 증서 발행 전에는 반드시 관련 등록증 사본을 심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확인 전까지는 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.
 - 2)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로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, 인 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여도 선박의 항해가 허용되며, 국내항으로 입항 전 수리/검사 등을 위하여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도 포함되오니, 해당 경우 선박 매입항에서 ISM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- 3) 심사 신청서가 개정되었으니, 첨부된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- 첨부: 1)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신규법비교 및 개정 전문
2) [별지 제13호서식]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 증심사 신청서
3) [별지 제14호서식]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 증심사 신청서

협약심사팀장